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산관리번호에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 인정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3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3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 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제1항), 부여된 전산관리번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 ---- <u>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이하 이 조에서 “사회보장급여”라 한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회

	<u>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u>
--	---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의2제1항¹⁾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²⁾되어 있음.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①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②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④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의 발급자는 3,699명임.

< 전산관리번호 발급자 수 현황 >

(단위: 명, ()는 수급자 수, 2025년 12월 말 기준)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3,699 (1,908)	848 (494)	576 (355)	582 (255)	552 (250)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410 (185)	286 (129)	237 (92)	208 (148)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취지가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대통령령뿐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전산관리번호에 인정하려는 개정안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1호³⁾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별도 조례를 통하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사회보장급여 법령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산관리번호에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거제시 출산장려금 사례⁴⁾와 같이 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가 한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4) 출생 미신고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은 못 드립니다 이유는?”, SBS 뉴스, 2026. 1. 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9415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전산관리번호 발급 시 해당 시·군·구에 임시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거주 요건과의 연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종류에 대한 위임 범위를 조례까지 넓히고, 전산관리번호의 효력을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은 국민의 수급권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서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8